##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0271

제안연월일 : 2025. 4.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표의원 (2209550)	2025. 4. 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4.25.)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4.2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신정훈의원 (2209723)	2025. 4.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4.25.)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4.2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한병도의원 (2209728)	2025. 4.10.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4.25.)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4.2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정희용의원 (2209743)	2025. 4.11.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4.25.)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4.2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의안명	대표 발의자	발의일	심 사 경 과
	엄태영의원 (2209874)	2025. 4.16.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직접 회부(2025.4.25.)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025.4.2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4.28.)는 위5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2025.4.28.)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최근 경북, 경남, 울산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농·어·임업인,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생계안정 지원과 피해시설 복구 지원 정도만 규율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농·어·임업인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구체화 및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 피해 복구 및 경영 안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간접지원의 대상에 도시가스 요금 및 지역난방요금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제3항제5호의2 중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전기요금"을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5의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 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7.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3월 21일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전까지 발생한 재난에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 · ② (생	조 등의 지원)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3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	
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	5의2
조에 따른 <u>소상공인에 대한</u>	<u>소상공인이 피해</u>
<u>지원</u>	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
	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
	한 지원

현 행	개 정 안
<u> </u>	5의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u>지원</u>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6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	
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u>전</u>	<u>전</u>
<u>기요금</u> 등의 경감 또는 납부	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
유예 등의 간접지원	<u> 방요금</u>
7.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	7.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
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	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